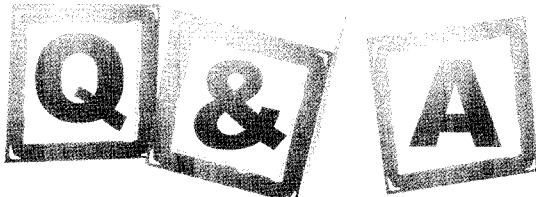


안전인증소식

**Q & A**



## 전기용품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몇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운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안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안전인증을 받은 후 타사 부품 사용이 가능한가?

안전인증 신청시 wire 제조업체를 지정하여 인증을 받았는데, 안전인증 제품 생산시 KS, 안전인증을 인증 받은 동등 이상의 타사 wire를 사용해도 되는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0조(안전인증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서상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전인증 기관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 가정용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Power Supply Cord 규격

일반 가정용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Power Supply Cord 규격에 대해 220/250V 사용 기준으로 Cord 두께 0.75mm가 국제 규격인지와 최소 두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전원코드 규격은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안전기준(K 60227-5)과 국제기준(IEC)이 동일하게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0.75mm<sup>2</sup>, 절연체의 두께는 0.6mm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수중 집어등에 사용하는 전선의 안전인증대상 여부

당사에서 수입·판매하는 선박용 수중집어등 전선(VCT2 \* 8㎟, 경질염화비닐)이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인지? 동 전선은 어선 선박용 집어등을 밝힐 때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으로 인장 강도나 내압, 침유성을 우수하게 하여 선박과 해수 속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 수중집어등용 전선은 수중집어용 장비들과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싱기 전선이어만 수중사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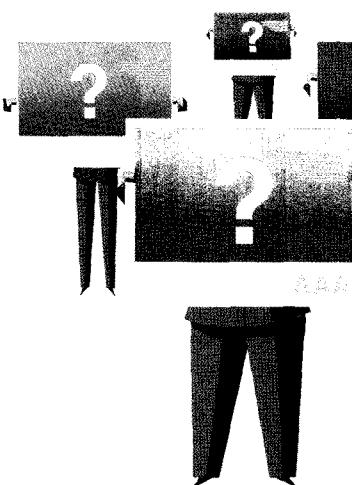


경질염화 비닐전선(VCT2 \* 8㎟, 경질염화비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나, 동 제품이 수중케이블로서 수중집어용 장비와 한 세트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확인대상(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 되는 것)에 해당되니, 면제기관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부터 안전인증 면제 확인을 받기 바랍니다.



## 노이즈 억제용 필터의 안전인증대상 여부

전도 노이즈 억제하는 필터로서 전원선 노이즈 억제용임. L은 페이이트 비드로 구성하며 C는 1마이크로 용량으로 코먼모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필터가 안전인증대상품목인지? 또한 대상 품목일 경우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이즈 억제 필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장해 억제용 전원필터에 해당되며, 적용받은 안전기준은 K60939-1(간섭방지용필터), K60939-2(전자파장해 방지용 필터 소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